



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 관련 8개 법률 국회통과

해운기업인에 대한 규제완화, 해상안전관리 강화

해양수산 관련 8개 개정 법률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, 선박투자회사법, 수 산업법, 등 8개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업인과 해운기업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부 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.

특히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(IMO)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증진 근거가 마련되고 선원과 관련한 국제협약 사항 등 이 반영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. 이날 통과 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.

▲ 배타적경제수역(EEZ)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: 지금까지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있는 외 국선박을 검거해 불법조업 사실을 추궁해도 도주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불법어획활동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고, 정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 벌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.

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, 정선명령에 불응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EEZ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.

▲ 선박안전법 : 선박안전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조선 등에 대해 강화된 검 사기준을 마련했다.

그 동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상호 텔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해 해

양안전 사각지대를 해소,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.

▲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선박투자회사법 : 선 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한국선주협회 등 해사(海事) 관련 단체 등이 조합에 출자한 때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.

이에 따라 이미 출자예수금을 한국선주상호보 험조합(KP&I)에 예치한 한진해운, 현대상선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해운기업들이 준조합원 가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조사시 조사이유 · 일정 · 계획 등을 사전통지 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를 투명화 할 수 있도록 했다.

▲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: 선박직원법과 선원 법은 내년도에 실시예정인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해 국가간 기술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제협약 사항을 반영했다.

또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영세어민이 조기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.

선원법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로 하선 공인 신청을 회피하거나 행방불명 등 하선공인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선원 본인이 하선공인을 신 청 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선박으로 승선기회 확보 등 선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.